#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

[시행 2022.5.20.] [2022.3.27. 제48차 대의원총회의결, 2022.5.20. 보건복지부 허가에 따른 제28차 개정본]

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습득을 도모하고 간호조무사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와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.
- 제2조(명칭 및 사무소) ①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(이하 '협회')라 칭한다.
  - ②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4,5층에 둔다.
- 제3조(사업)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- 1.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
  - 2. 보건의료제도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4. 간호조무사 업무의 개선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
  - 5.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
  - 6.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
  - 7. 기관지 및 간호조무사 관계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
  - 8. 간호조무사양성교육 평가기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- 9. 간호조무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  - 10.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
  - 11. 대북 지원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
  - 12.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
  - 13. 간호조무사 관련 서적과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등 인쇄·출판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  - 14.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- ②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

있다.

- 1. 임대관련 사업
- 2. 사회복지관련 사업
- 3. 회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제휴 및 통신사업
- ③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.
- ④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- ⑤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구성) 협회는 시·도회와 해외지부로 구성한다.

#### 제2장 회 원

- 제5조(회원) ① 협회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협회 와 소속 시.도회의 회원이 된다.
  - ② 회원은 각 소속 시.도회를 경유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등록을 필해야 한다.
  - ③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-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
  - ③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.
- 제7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시·도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③ 회원은 취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④ 회원은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- 제8조(명예회원) 명예회원은 간호조무사나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강화에 현저하 게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 다만, 회원의 권리 와 의무는 없다.
- 제9조(특별회원)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협회에 입회등록을 한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 특별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.

#### 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)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7명(서울 1명, 수도권 1명, 지방 2명,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장 1명,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1명, 교육위원장 1명). 단,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,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, 교육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- 3. 이사 40명 이내(회장, 부회장, 시·도회장, 상임이사 포함)
- 4. 상임이사 15명 이내
- 5. 감사 4명
- ②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다.
- 제11조(임원 선출) ① 회장단(회장 및 부회장)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다.
  - ②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한다.
  - ③ 외부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협회장은 시·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·도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한다.
  - ⑤ 제44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회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·도회장은 대의원총 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- ⑥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
- ①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제1항의 회장단(회장, 부회장)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
- ⑧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며,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신임 회장단은 임기개시 전 상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.
- ⑨ 시·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- ⑩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과 교육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#### 제12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시·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.
- ④ 회장단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(시도회는 3월 1일)로, 당연 직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선출일자부터로 한다.
-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다.
- 제13조(임원의 보선) ① 회장의 유고 시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, 회장임기가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상임이사가 결원되는 경우에는 회장단이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,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4조(임원의 의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.
- ④ 상근하는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.
- ⑤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은 없지만 안건에 대하 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⑦ 감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.

- 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.
 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② 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임원 등 해임) 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과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  - 1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. 단,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2.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
  - 3.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
  - ② 위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  - ③ 회장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,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-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,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- ⑤ 임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.
- 제17조(명예회장) ① 협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  - ② 명예회장은 임기 3년을 역임한 직전 회장으로 하고,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임기 3년을 역임한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.

- ③ 명예회장은 회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권리와 의무는 없다.
- ④ 명예회장은 협회 중대 현안문제에 대해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할수 있다.
- 제18조(고문,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) ① 협회에 고문,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고문,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-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여하지 않으며, 권리와 의무는 없다.
  - ④ 고문,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4장 대의원총회

- 제19조(대의원총회)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,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(이하 '대의원총회'라 한다)로 구분한다.
  -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,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,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정기대의원총회는 30일 전까지,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 전(회장선거인 경우는 30일 전)까지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각 시·도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 - ④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.
- 제20조(대의원 등록)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참석 시 의장이 교부한 인준장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시·도회는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예비대의원이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대의원총회 개최 4일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3일 전까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및 예비대의원에게 인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)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- ② 재적대의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 수로 한다.
  - ③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화성을 얻어야 한다.
  -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상임이사 중 의장이 지정한 1명과 함께 서명하고,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의결사항)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회장단(회장, 부회장) 및 감사, 윤리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
- 5.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6.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7.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·도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- 8. 자산에 관한 사항
- 9. 협회의 주요규정(윤리위원회규정, 감사규정, 선거관리규정 및 시·도회운 영 규정)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10. 협회 예산을 사용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11.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, 윤리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
- 제23조(의안) ① 시·도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개최 15일전 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의안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.
  - ③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제24조(서면 등 결의) ① 의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으며, 서면 결의 시 재적 대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5장 대의원

- 제25조(대의원 자격) ① 대의원은 정관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- ② 대의원은 대의원선출 연도 직전 2년간 회비를 각 해당 연도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.
- 제26조(대의원 선출방법) 대의원은 각 시·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단, 당연직 대의원은 예외로 한다.
- 제27조(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 방법) ①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으로 하며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당연직대의원은 정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원으로 하다.
  - 1. 고정대의원 : 시·도회 각 2명
  - 2. 비례대의원 :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수를 뺀 나머지 대의원수를 매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회원수(회비납부자)의 비율에 따라 배정
  - 3. 예비대의원 : 시·도회별로 순위를 정하여 대의원 정수의 20% 범위 내에서 선출
  - ② 협회의 임원, 윤리위원, 교육위원,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위원은 당연 직 대의원으로 한다. 다만, 간호조무사가 아닌 임원, 윤리위원, 교육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28조(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)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·도회 선출 대의원(선출직 대의원)의 임기: 1년으로 하며,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1년 후의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 보선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한다.
- 2.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: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으며, 기간은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. 보선된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-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.
-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속 시·도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회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4일 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) ① 시·도회장은 대의원 선출결과를 시·도회 대의원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시·도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의장 및 부의장) ① 대의원총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되, 의장은 협회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부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된다. 다만 회장, 부회장, 감사, 윤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.
  - ② 의장,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,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.
  -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하며,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1조(참관권)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, 참 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개최일 3일전까지 협회에 참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이사회

- 제32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시·도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제33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  -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

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임 시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정기이사회 회수에 포함시킨다.

- 제34조(이사회의 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  - ② 회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,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  - ③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. 서면 결의 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5조(이사회의 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협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- 2.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3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- 4.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- 5. 정관 및 제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6.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
- 7.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및 교육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
- 8. 윤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- 9. 고문,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
- 10. 협회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(분과)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
- 11. 선거관리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
- 12. 시·도회 회칙 인준 및 시·도회 설치에 관한 사항
- 13. 사무총장 인준에 관한 사항
- 14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

### 제7장 상임이사회

제36조(상임이사회) 협회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.

제37조(상임이사회 구성과 의결)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

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총무, 기획, 학술, 재무, 법제, 공보, 사업, 정책, 국제 등
-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임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④ 상임이사회는 년 4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다.
- 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⑥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38조(상임이사회의 임무)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2.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- 3.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
- 4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요청에 관한 사항
- 6.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9조(상임이사의 개별임무) 상임이사회의 개별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총무이사
- 가.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
- 나. 각종 행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
- 다. 각종 회의진행의 연구검토사항
- 2. 법제이사
- 가. 정관에 관한 사항
- 나. 제규정에 관한 사항
- 다. 의료·보건관계 제 법규에 관한 사항
- 라. 간호조무사 기강 및 윤리앙양 연구에 관한 사항
- 3. 학술이사

- 가.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- 나. 간호조무사 발전에 관한 사항
- 다. 간호조무사 교육 및 홍보책자 발행에 관한 사항
- 라. 기관지 발행
- 마. 회원의 자질향상 및 의식개혁 연구
- 4. 재무이사
- 가.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나.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
- 다.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예산의 개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
- 5. 사업이사
- 가. 협회사업의 계획연구에 관한 사항
- 나. 협회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다. 회원복지 및 권리에 관한 사항
- 라. 공익성이 있는 특별사업에 관한 사항
- 6. 공보이사
- 가.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
- 나. 협회보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
- 다.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
- 7. 기획이사
- 가.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나.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에 관한 사항
- 다.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
- 8. 정책이사
- 가. 단기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
- 나. 간호조무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
- 9. 국제이사
- 가. 협회 국제교류사업
- 나. 해외봉사사업

### 제8장 시·도회

제40조(시·도회의 명칭 및 사무소) ① 각 시·도회 명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

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(약칭 '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'), 대한간호조무사협회 ㅇㅇ광역시간호조무사회(약칭 'ㅇㅇ광역시간호조무사회'), 대한간호조무사회' 사협회 ㅇㅇ(특별자치)도간호조무사회(약칭 'ㅇㅇ(특별자치)도간호조무사회')라 칭한다.

- ② 각 시·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·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시·도회에는 각 시·군·구 분회 및 특별 분회를 둘 수 있다.
- 제41조(시·도회운영규정) ① 각 시·도회는 시·도회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각 시·도회는 정관 및 시·도회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시·도회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- 제42조(감사 실시) 감사는 매년 협회 및 시·도회의 재무 및 회무에 관한 지도 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제43조(보고의무) ① 각 시·도회는 시·도회의 임원 선임 또는 소속분회의 임원 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각 시·도회는 회원의 정기 신고, 이동 상태 및 소원을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각 시·도회는 임원명단, 예산서, 결산서, 사업계획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시·도회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각 시·도회는 협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지도와 감독) ① 각 시·도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의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되, 12월 은 31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협회 회장은 시·도회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·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③ 협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·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시·도회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전까지 시·도회의 사고 해결을 위하여 임시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임시관리인을 지정할

- 수 있고, 임시관리인에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시·도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임시관리인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.
- 제45조(권한 위임) ① 회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시· 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권한위임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9장 윤리위원회

- 제46조(윤리위원회) ①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윤리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47조(구성)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회원으로서 윤리위원 선출 직전년도까지 5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자로, 협회 및 시·도회 임원경력이 2년이상인 자.
  - 2.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, 보건의료,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.
  - ② 위원 중 1명은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임기 중에 있는 협회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윤리위원은 협회임 원이 될 수 없다. 이 때 협회임원에는 시·도회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- ④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윤리위원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 윤리위원이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⑥ 윤리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, 윤리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8조(회원의 징계)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.

- 1. 간호조무사로서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때
- 2.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
- 3. 협회 정관을 위반한 때
- 4. 협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때
- ② 협회임원 및 시·도회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.
  - 1.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  - 2. 회비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- 3. 협회 및 시·도회 기능 및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- 4. 협회 감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였을 때
  - 5. 대·내외적으로 현저하게 협회 및 시·도회의 체면을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
- ③ 징계에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9조(포상) ① 협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, 일반인 또는 시·도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 - ② 회장은 윤리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다.
  - ③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10장 자산 및 회계

- 제50조(자산 및 회계) ① 협회의 자산은 협회 소유동산, 부동산 및 대의원총회 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  - ② 협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부담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- ③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.
  - ④ 기금 및 적립금을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로 조성하고, 정기대의원총회에 서는 전년도 적립된 입회비의 일부를 목적사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  - 1. 간호조무사발전기금 : 대외활동사업 및 교육관련사업
    - 2. 회관건립기금 : 회관 설립, 매입 및 임차 보증금

- 3.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설립기금 : 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 및 운영
- 4. 균형발전교부기금 : 중앙회 및 13개 시도회 균형발전
- 5. 사회공헌사업기금: LPN봉사단 운영 및 사회봉사사업
- 6. 입회비적립금 : 목적사업기금 외
- ⑤ 협회 및 시·도회의 재산을 매입·처분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 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⑥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이 있는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51조(예산 및 결산) ① 매년도의 세입·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매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및 사업실적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다만,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및 사업실적과 당해연도 세입·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시기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후로 조정할 수 있다.
- 제52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- 제53조(임시지출) ①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기금은 기금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사회 의결로 지출하되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54조(재산의 구분)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- ② 시·도회 및 산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협회로 하고 관리는 시·도회 및 산하단체로 한다.
  - ③ 협회 재산목록은 <별표1>과 같다.
- 제55조(해산) 협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
- 제56조(잔여재산의 처분) ① 협회 해산 시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협회와 설립 목적이 유사한 법 인에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.
  - ② 시·도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시·도회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로 귀속할 수 있으며, 시·도회 해산 시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.

#### 제11장 사무처

- 제57조(사무처)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 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-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사무처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  - ④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, 급여, 직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8조(사무총장의 임무)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회장의 지시 하에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.
- 2.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3.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.

# 제12장 협의회 및 위원회

- 제59조(위원회) ①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협의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- 1.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
  - 2. 교육위원회
  - 3.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
  -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제60조(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) ① 협의회 및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구성,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  - ③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④ 전문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13장 보 칙

- 제61조(규정제정)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단, 윤리위원회규정, 감사규정, 선거관리규정, 시·도회운영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.
- 제62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기존 평생회원 자격유지) 정관 제5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종전 규정에 의해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회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인정한다.
- 제3조(한시적 중앙회장의 임기 조정)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0대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4년으로 한다.

# [정관 연혁]

```
1974. 12. 24. : 최초 승인
1976. 4. 5. : 제1차 개정
1982. 3. 27. : 제2차 개정
1984. 3. 26. : 제3차 개정
1985. 4. 1. : 제4차 개정
1986. 6. 16. : 제5차 개정
1987. 6. 19. : 제6차 개정
1988. 4. 14. : 제7차 개정
1988. 12. 5. : 제8차 개정
1990. 4. 16. : 제9차 개정
1991. 6. 5. : 제10차 개정
1992. 4. 1. : 제11차 개정
1995. 5. 11. : 제12차 개정
1997. 4. 15. : 제13차 개정
1998. 4. 14. : 제14차 개정
```

- 1999. 5. 11. : 제15차 개정 2000. 4. 24. : 제16차 개정 2004. 6. 18. : 제17차 개정
- 2007. 10. 15. : 제18차 개정 2008. 9. 8. : 제19차 전면개정
- 2010. 6. 15. : 제20차 개정(1차 허가일 2010.5.26., 2차 허가일 2010.6.15.)
- 2012. 4. 15. : 제21차 개정 2013. 4. 15. : 제22차 개정 2016. 8. 17. : 제23차 전면개정 2017. 6. 1. : 제24차 개정 2018. 9. 21. : 제25차 개정
- 2019. 4. 30. : 제26차 개정 2021. 6. 22. : 제27차 개정 2022. 5. 20. : 제28차 개정